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624
----------	-----

제안년월일 : 2019년 4월 22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경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479호)과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541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정수지나 배수지 등의 수도시설 외부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수돗물 품질 및 구조물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방수·방식 공사시 감리제도, 즉 건설사업관리와 이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 수도계량기 보온재 설치 등 지속적인 동파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장에서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되거나 분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되고 있어 수도사용자등의 급수 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 수도계량기 동파가 최소화 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시장은 정수지·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수돗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정수지 및 배수지 방수·방식공사 시 감리제도, 즉 건설사업관리와 이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40조의5 신설)

- 나. 수도계량기 기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2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5(수도시설 유지관리) ① 시장은 정수지·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수돗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지 및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중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계량기 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0조의5(수도시설 유지관리) ① 시장은 정수지·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수돗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지 및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 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p> <p>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 ----- . 〈단서 삭제〉</p> <p>②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계량기, 수도</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계량기, 수도</p>

계량기 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